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11. 2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11. 21

다. 상 정 일 자 : 제54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제1차 총무사회위원회('96. 11. 26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병일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기획실(3개 담당관 포함) 및 4개 계 신설에 따른 기구개편과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□ 구분청

○ 총괄 : (현) 3실 3국 16과 62개 ⇒ (조정) 1실 3국 16과 65개

▷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 3실에서 기획실 1실로 조정

▷ 징수와 징수계(기존 징수계는 징수관리계로 변경), 환경보호과 생활공해계,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3계신설

○ 행정기구 신설 및 조정

▷ 신설 : 기획실(기획감사담당관, 재무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)

▷ 조정 : 기획감사실 ⇒ 기획감사담당관
재 무 과 ⇒ 재무담당관
문화공보실 ⇒ 문화공보담당관
민원봉사실 ⇒ 총무국 민원봉사과

○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

- ▷ 현재의 기획감사실, 재무과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 분장사무
⇒ 기획감사담당관, 재무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민원봉사와 분장사무로 조정
- ▷ 현재의 가정복지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⇒ 사회복지과 사무로 조정
- ▷ 현재의 광역시 업무인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⇒ 환경보호과 사무로 조정
- ▷ 현재의 건축과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⇒ 지적과 사무로 조정

□ 의 회 : 1국 1계 ⇒ 1국 2계(의정계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 제2조, 제3조 규정은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을 기획감사담당관, 재무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막료 기능을 보강하여 행정조직을 동태화하고 채신적, 창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,
- 제5조의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은 대민 봉사 행정조직을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, 책임성 있는 행정 수행을 위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체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짐
- 제6조의 “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'96. 6. 1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시 가정복지국 분장사무가 보건사회국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·구의 담당조직을 연계시켜 장애인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
- 제6조의 “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”을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, 위탁에 관한 조례가 '96. 7. 26 개정됨에 따라 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새로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됨.
- 제7조의 “건축물 대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도시국 지적과 분장사무로 한것은 토지, 건물등 부동산 관련 담당기구를 일원화하여 업무수행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